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장기연체가능성”이란 차주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3개월 이상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한 채무의 연체 또는 이에 상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확률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산정한 값을 말한다.

제5조의6의 제목 “(개인신용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개인 신용대출 기준)”을 “(개인신용평점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개인 신용대출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산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차주에 대한 대출취급액 또는 대출취급건수가 해당 상품 전체 취급액 또는 취급건수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행령 제6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평점 기준은 다음 각 호 중 어

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개인신용평점이 상위 100분의 93에 해당할 것
2. 장기연체가능성이 1만분의 65 이하에 해당할 것

##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령 제6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등급 기준은 개인신용  
등급 1등급부터 6등급까지를 말  
한다.

② (생략)

령 제6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평점 기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  
우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  
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개인신용평점이 상위 100분  
의 93에 해당할 것

2. 장기연체가능성이 1만분의  
65 이하에 해당할 것

② (현행과 같음)